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472
----------	------

제안년월일 : 2020년 4월 23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송도호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71호), 김태호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89호), 이승미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90호)을 서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2020.4.23.)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3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건의 개정조례안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송도호 의원 외 9명, 김태호 의원 외 9명, 이승미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과 특별교통수단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한 시장의 의무 규정하고, 시장이 교통약자 이동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장애인콜택시 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을 자문하는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의 자문범위와 소위원회 운영 규정을 조례에 명시할 위한 것인 바,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함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시장은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과 특별교통수단의 보건 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제3항).
- 나. 교통약자가 특수교통수단 외의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시 택시 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16조 신설)
- 다.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자문사항 및 분과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명시함(안 제17조 신설)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과 특별교통수단의 보건 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위해(危害) 방지를 위한 방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18부터 제28조까지로 하고,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특별교통수단과 별도로 제15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이용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 지원 수단 중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아니한 차량의 운행 방법 등은 제11조를 따른다.

제17조(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선 및 현안문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범위와 이용자 수칙 등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교통위원회 대안
<p>제3조(시장의 책무)</p> <p>①·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3조(시장의 책무)</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과 특별교통수단의 보건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위해(危害) 방지를 위한 방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16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p> <p>① <u>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특별교통수단과 별도로 제15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이용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 지원수단 중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아니한 차량의 운행 방법 등은 제</u></p>

<신 설>

제16조 ~ 제26조 (생략)

11조를 따른다.

제17조(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선 및 현안문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범위와 이용자 수칙 등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 제28조 (현행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와 같음)